##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05

발의연월일: 2020. 12. 31.

발 의 자: 강선우·박성준·김승원

김민철 · 서영교 · 송재호

양경숙 · 강득구 · 주철현

황운하 • 아수진비 • 고영인

이규민 • 허종식 • 문정복

서영석 의원(16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전문적인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의 및 역할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학교사회복지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정의를 신설하고, 사회복지 사업의 범위에 학교사회복지를 추가함으로써 학교사회복지 사업의 활 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·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). 법률 제 호

###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사회복지관 운영"을 "사회복지관 운영, 학교사회복지"로 하고, 같은 호 허목을 고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허. 「초・중등교육법」

- 2의2. "학교사회복지"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학교"라 한다)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수 및 학습의 과정에 장애요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잠재능력을 최대화시키기 위하여 가정·학교·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사회복지를 말한다.
- 2의3. "학교사회복지사"란 사회복지사로서 학교 및 학교사회복지 관 계 기관에서 학교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사회복지사업"이란 다음 각	1
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·선도	
(善導) 또는 복지에 관한 사	
업과 사회복지상담, 직업지원,	
무료 숙박, 지역사회복지, 의	
료복지, 재가복지(在家福祉),	
사회복지관 운영, 정신질환자	사회복지관 운영, 학교사회복
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	<u> </u>
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	
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	
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	
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	
말한다.	
가. ~ 퍼. (생 략)	가. ~ 퍼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허. 「초·중등교육법 <u>」</u>
<u>허.</u> (생 략)	<u>고.</u> (현행 허목과 같음)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2의2. "학교사회복지"란 「초·
	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
	학교(이하"학교"라 한다) 및
	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

<u><신</u>설>

3. ~ 7. (생 략)

하는 학교에서 교수 및 학습의 과정에 장애요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잠재능력을 최대화시키기 위하여 가정·학교·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사회복지를 말한다.

2의3. "학교사회복지사"란 사회 복지사로서 학교 및 학교사회 복지 관계 기관에서 학교사회 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
3. ~ 7. (현행과 같음)